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64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추경호・金炳旭・성일종

한무경 · 서일준 · 이명수

김예지 · 임이자 · 정진석

김선교 · 김용판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 공공목적의 수용 시에도 비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인해온 경제적·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산림 보존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유림 확대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 나.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10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제85조의 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 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 년 12월 31일까지----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 면하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 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 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의 80----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
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
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
<u>00분의 25</u> 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을 통하여 <u>2020년 12월 31일까</u>
<u>지</u>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۷
<u>1</u>
00분의 50
②
<u>2023년 12월 31일까</u>
<u>2023년 12월 31일까</u> <u>지</u>
<u></u>
<u></u>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 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 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 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④ (생 략)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 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1
<u>100분의 80</u>
2
100분이 50
<u>100분의 50</u> ③·④ (현행과 같음)
세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산지를 <u>2020년 12월 31일</u> 이전	<u>2023년 12월 31일</u>
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	
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